

직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5.22., 개정 2019.09.16., 개정 2025.04.16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위원회 위원은 인사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5.04.16.>

제3조 (임기)

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 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 및 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

- ① 직원의 인사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
- ③ <삭제 2019.09.16.>
- ④ 승진추천에 관한 사항<신설 2019.09.16.>
- ⑤ 직원의 표창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<신설 2019.09.16.>

제6조의 2 (승진 추천) <본조신설 2019.09.16.>

제6조 제④항에 따른 승진추천은 근무평정, 현 직급 근무경력, 교육연수 참가, 보직경력, 상벌 및 근태 등을 반영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록작성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간사)

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총무팀 인사담당으로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제9조 (운영세칙)

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4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